**저작권 이용 허여 계약서**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연수힐스테이트 102동 1003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현욱(이하 ‘갑’ 또는 ‘저작자’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덴트웹(이하 ‘을’ 또는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상 용어는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1. ‘저작물’이란 ‘갑’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저작권 등록번호 제 C-2017-017443 호 및 제 C-2016-016171 호) 및 “상담 동영상”(저작권 등록번호 제 C-2016-019373 호)을 말한다.
2. ‘저작권’이란 제1조 1항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대상제품’이라 함은 ‘을’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2조 (저작권 이용권리의 허여)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여 ‘대상제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을’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 이용 권리를 허여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저작물’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양도하거나 이용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

제3조 (저작권 이용 허여 기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권 이용 권리 허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 동안으로 하며,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 함으로써 저작권이 소멸하는 때까지 저작권 이용 허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종료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로 복귀한다.

제4조 (이행 보증금 임치)

1. 본 저작권 이용 허여 계약에 대한 이행 보증금으로 ‘을’은 ‘갑’에게 일금 오억 원(\500,000,000)을 임치 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을’이 예정하고 있는 1차 유상증자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갑’에게 임치 한다.
3. 본 저작권 이용 허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은 임치된 보증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4. 저작권 이용 보증금 임치에 따른 저작물 감정평가 또는 제세 공과금이 필요한 경우 ‘을’은 이에 소요되는 제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 (저작권 이용료) ‘을’은 저작권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1. ‘을’은 저작권 이용 허여 대가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는 대상제품 총 매출액의 10%를, 10년 이후부터는 대상제품 총 매출액의 8%를 ‘갑’에게 지급한다.
2. 저작권 이용료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기로 하여 당해년도 저작권 이용료를 익년도 1월 말에 지급한다.
3. ‘을’이 제5조 각 항의 저작권 이용료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을’은 연 1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 (저작권 이용 자문)

1. ‘갑’은 ‘을’이 저작권을 이용하여 대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에 응해야 한다.
2. ‘을’은 ‘갑’이 제1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제7조 (기술의 개량)

1. ‘갑’이 본 계약의 저작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저작권 이용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을’이 새로운 저작권 또는 특허권 이용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작권 또는 특허권 등록, 출원,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 (저작권 침해)

1. 일방 당사자가 본 저작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 당하였다는 의견을 가지는 경우 동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침해자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 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제소의 권리를 가지나 의무는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제소하는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소하지 않는 당사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소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저작물 및 대상제품 제작에 관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기로 하고, 동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의무는 ‘을’의 임원 및 피고용자나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2.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의 비밀보장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의무이행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2. ‘을’이 본 계약의 제4조에 따른 저작권 이용 보증금을 ‘갑’에게 임치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본 계약의 제5조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4. 기타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30일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의무이행 또는 위반사항 시정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6. 저작물을 이용하여 대상제품을 제작,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를 ‘갑’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대상 제품의 제작 및 판매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어렵게 된 경우
7. ‘갑’이 대상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을 개발하여 타인에 제공하거나 스스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대상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을’의 대상제품의 제작 및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8. 기타 ‘갑’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9. 제12조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서면 동의에 의해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1.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다만,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 (기밀정보 및 명칭 사용)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적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사업상 필요한 경우 ‘갑’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갑’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중요사항의 변경)

* ‘갑’과 ‘을’은 계약체결 후 주소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한다.

제16조 (준거법과 관할합의)

* 본 계약에 의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제18조 (해석)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각 조항의 효력)

*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여하한 사유로 무효로 판단된 경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기타)

* 본 계약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관계를 정하고 있으며, ‘갑’이나 ‘을’은 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이거나 적법한 허락 없이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할 권리나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이상의 약정내용을 확인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유하기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서명 하였다.

2017 년 10 월 20 일

저작자(갑) 충북 충주시 연수동산로 26 연수힐스테이트 102동 1003호

이 현 욱 (서명 또는 날인)

이용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 2층

법인등록번호 110111-6526705

주식회사 덴트웹 (서명 또는 날인)